



제 2018-165호

중국

## 뉴스 앱 진르투티아오, 신문기사 무단전재로 10만 위안 배상 판결

북경사무소

### ■ 현황

- 2015년 6월 5일부터 현대쾌보(现代快报)는 자사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 4편을 보도하였음. 하지만 진르투티아오(今日头条)가 동 기사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한 것을 발견한 이후, 2015년 9월 현대쾌보의 운영사인 장쑤 현대쾌보 전매회사(江苏现代快报传媒有限公司)는 진르투티아오의 운영 기업인 바이트 댄스(字节跳动, ByteDance)를 상대로 장쑤성(江苏省) 우시시(无锡市)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와 관련하여 피고 바이트 댄스사는 문제 된 4건의 기사는 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 주요 내용

- 1심 법원인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문제 된 4건의 신문기사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无)에서 유(有)로 라는 독립적인 창작 과정을 거치는 등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 또한 창작된 저작물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완성된 업무상 저작물(职务作品)에 해당하므로, 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 장쑤 현대쾌보 회사와 동 회사의 우시 자회사에 속한다”라고 하여 사안에서 문제 된 신문기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에 해당하며, 중국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천명함
- 또한 “피고 바이트 댄스사는 소송에서 단지 링크 서비스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설사 링크 서비스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라고 함과 동시에 “진르토크우티아오의 영향력, 전파 범위와 주관적 과실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이트 댄스사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10만 위안과 권리 수호를 위한 합리 비용 1.01만 위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함
- 1심 판결에 불복한 바이트 댄스사는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지만, 상소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상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한다”라는 판결을 최근 내림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 ■ 평가

- 최근 중국에서 신문기사의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음. 특히 신문기사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기자의 창작성이 들어간 기사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인 등 기관과 단체가 저작권을 행사하게 됨



- 동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문기사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배상액이 과거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인데,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저작권법 개정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상금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출처

- 신화망(新华网)  
- [http://www.xinhuanet.com//2018-10/16/c\\_1123566157.htm](http://www.xinhuanet.com//2018-10/16/c_1123566157.htm)